

부산광역시사하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 6. 8. ----- 사하구청장
- 나. 회 부 일 자 : 2004. 6. 8.
- 다. 상 정 일 자 : 2004. 6. 21.(제119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사회복지과장 정석한)

가. 제안이유

- 의료급여법 전문개정으로 인해 변경·사용되는 용어 및 법조항의 정비와 2004. 7. 1부터 사회복지사무소를 시범 운영하게 됨에 따라, 직제개편에 상응하는 공무원의 관직을 변경·지정함으로써 의료급여기금 관리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법개정으로 인한 용어정비
 - 조 례 명 : 의료보호기금 → 의료급여기금
 - 용어정비 : 의료보호 → 의료급여, 보호대상자 → 수급권자
- 공무원 회계관직명 정비(안 제4조제1항)
 - 사회복지과장 → 복지지원과장
 - 노사협력담당 → 자활의료지원팀장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본 조례 개정건은, 2004. 7. 1부터 사회복지사무소의 시범운영과 의료급여법 전문개정 등으로 공무원 직제와 용어 등을 관련 법령에 맞게 정비 보완, 지정함으로써 의료급여기금 관리 및 집행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의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확립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다고 판단되며, 또한 기금관리 및 집행에 관한 규정이 의료급여법 등에 명시되어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위 조례 개정은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 의료급여법 전문은 2001. 5. 24 법률 제6467호로 개정되어 현재 통용되고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중진의 생활보호법의 대체입법으로 1997. 9. 7 법률 제6024호로 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음, 따라서 위법은 영세서민들을 비롯한 우리구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공사간의 법익과도 직결되는 부분이 많은 생활법이기도 함

- 따라서 의료급여나 국민기초생활관련 용어 하나하나에 각별한 관심과 신경을 써야할 부분이 많음에도 위 법 제·개정이후 수년간 방치해오다 수시 필요에 따라 조례개정 등을 통하여 보완정비함은 법규연찬 등 직무에 다소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며 또한 구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 행정 편의적인 발상으로 참여복지 실현과 위민봉사 행정구현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대의를 발현키 위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는바, 해당부서장은 조속한 기한내 위 법을 비롯한 타법 관련 용어 등을 관계법령에 맞게 일제 정비하여 주민들의 사용에 불편과 혼란 등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각별 유념하기바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